

조선일보 4. 4.(목)	“재외투표율 62.8” 선관위의 과대표장 선거관 보낸 지역, 없는 곳보다 투표참여 낮아
KBS 4. 4.(목)	역대급 투표율? 실상은... 재외선거권자 4. 7.%만 투표
세계일보 4. 5.(금)	선관위 ‘재외투표율 62.8%’ 뺑뺑기 논란
문화일보 4. 5.(금)	대사관서 해도 되는 업무인데 22명 파견 선관위, 재외국민선거에 혈세 33억 썼다

[보도내용]

- ① 재외투표율 62.8%는 재외선거 신청자 수 대비 투표자 수로 과장된 수치, 전체 재외국민 대비 투표자 비율은 4.7%에 불과
- ②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외선거 등록률 더 높아
- ③ 재외선거관 수십 명을 매년 해외에 상주시켜 과도한 세금 낭비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재외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44, 2005헌마360)으로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후 2012년 제19대 국선부터 실시함.
※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
- 재외선거가 도입된 **헌법적 취지**, 재외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국민화합** 및 **정치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참정권이 라는 기본권 행사를 단순히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음.**
※ 재외선거 등록률이나 투표율은 정치적 상황 등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률 등만으로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

1 재외선거 투표율 관련

○ 투표율은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수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재외투표율을 표기·공표하여 왔음.

※ 「공직선거법」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주민등록제도가 잘 되어 있어 선거인명부를 직권 작성하는 국내와 달리 재외선거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명부에 등재하는 신고·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2 재외선거 투표자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자수는 역대 국선 중에 가장 많음.

구 분	제22대 국선 (‘24. 4. 10.)	제20대 대선 (‘22. 3. 9.)	제21대 국선* (‘20. 4. 15.)	제19대 대선 (‘17. 5. 9.)	제20대 국선 (‘16. 4. 13.)	제18대 대선 (‘12. 12. 19.)	제19대 국선 (‘12. 4. 11.)
선거인수	147,989명	226,162명	171,959명	294,633명	154,217명	222,389명	123,571명
투표자수	92,923명	161,878명	40,858명	221,981명	63,797명	158,225명	56,456명
투 표 율	62.8%	71.6%	23.8%	75.3%	41.4%	71.1%	45.7%

3 재외선거 등록률 관련

○ 보도에서 언급된 국가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에 비해 추정 선거권자수가 극히 적으므로 단순 등록률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의미가 없음.

※ 보도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등록률 비교(제22대 국선 기준)

파견여부	국가명	추정 선거권자수	신고·신청자수	등록율
미파견	인 도	9,088명	1,699명	18.69%
	태 국	16,230명	1,601명	9.86%
파 견	미 국	873,277명	34,490명	3.95%

- 재외선거 실시 공관 178개 중 재외선거관 파견 공관은 22개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추정 선거권자의 68%, 신고·신청자수의 56%를 관할하고 있음.

※ 파견공관 및 미파견공관 추정 선거권자수 등 비교(제22대 국선 기준)

파견여부	공 관 수	추정 선거권자수	신고·신청자수	등록률	담당자 1인당 평균 신고·신청자수
파 견	22개 (12.4%)	1,342,806명 (68.0%)	85,014명 (56.4%)	6.3%	3,864명
미파견	156개 (87.6%)	631,464명(32.0%)	65,687명(46.6%)	10.4%	421명

4 재외선거관 파견 관련

- 재외선거관 파견제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에 의한 법과 규칙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 재외선거관은 재외투표 관리 등 절차사무를 사건·사고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선거 참여 홍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주재국 선거·정치제도 관련 자료수집 등을 통해 재외선거 참여 확대와 공명선거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한편, 재외선거관은 2019년부터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 원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하여 1년간 파견 중으로 매년 상주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